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의안
번호

2742

서호연 의원 (국민의힘, 구로3)

- ☐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!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국민의힘 구로구 제3선거구 출신 서호연 의원입니다.
- ☐ 본 의원 외 20명이 찬성한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☐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 - 서울시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,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.
 -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, 후기 고령자의 신체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☐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 - 75세 이상 고령자의 신체활동 지원을 위해, 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감면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.
- 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☐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!
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.